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정책

최윤경 연구위원

양성평등에 기초한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의 균등한 육아 참여에 근거한 스웨덴의 육아지원 설계는 세계 각 국에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지급과 함께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육아지원의 조합과 배치, 그리고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과 차등지원의 설계가 특징적이다.

또한 정책의 측면에서 스웨덴 아동의 건강하고 역량있는 성장 발달을 위해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의 강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한 교육개혁 작업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 산하로 완전 통합된 국가 유형으로, 영유아 교사의 자격 강화와 교육과정의 변화가 통합된 교육의 체계 내에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스웨덴의 육아정책 개관

가. 육아정책 특성 및 지원체계¹⁾

스웨덴의 육아정책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으로 영유아기 공보육·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왔다. 남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가구 모형(Dual-earner model)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이 지향한 리스본 전략(European Parliament, 2010)²⁾의 핵심이 생애초기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제공에 기초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Samuelsson & Sheridan, IJCCPEP, 2009).

스웨덴의 ECEC는 모든 아동기 서비스와 의무 교육 체계가 교육부 산하 완전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OECD, 2001). 취학전 영유아기 교육·보육(ECEC)과 이후 학교 체계가 각기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일한 예산과 규제, 훈련과 교육, 서비스 전달의 제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접근하는 효율성을 갖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ECEC 정책은 육아지원 체계와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스웨덴의 육아정책동향(II)」(최윤경·김윤환·이혜민, 2015)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1)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utbsys-eng> 참조

2) Lisbon Strategy는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EU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고한 사회적 응집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성 있는 지식 기반 경제사회로 만들고자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가리킴(<http://www.europarl.europa.eu/document/activities/cont/201107/20110718ATT24270/20110718ATT24270EN.pdf>, 2015년 12월 10일 인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육아 지원에는 부모 육아휴직 및 보험과 각종 수당 지원이 있으나, 이는 ECEC 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과 연동되어 있다. ECEC 기관 비용 지원은 비용상한제 하에서 자녀수와 이용시간, 부모소득에 따라 다르며 또한 모 취업 여부와 육아휴직 등을 고려하고 있다.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스웨덴의 육아지원을 대표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 양성평등 모델에 기반하여 부모 모두에게 제공되는 긴 육아휴직 기간(8개월~최대 16개월)의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높은 소득 대체율, 부성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성화, 부모 동시육아휴직제(2012년)을 도입하여 양성평등의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13개월 동안 평균 급여의 약 80%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월 최대 SEK 37,083(2015년 기준, 한화 약 520만원)이다. 나머지 3개월은 기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부모의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양성평등등보너스 제도(Gender equality bonus) 도입하여, 부성 육아휴직 시 세액공제의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유급 육아휴직 9개월을 부부가 동등하게 나눠 사용했다면 양성평등등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정책은 근로시간 정책과 병행되어 자녀가 초등 1학년까지 근로시간의 25%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급여는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다.

2) 아동수당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원은,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SEK 1,050(2015년 기준, 한화 약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의 사용처를 정부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나, 부모들은 수당을 피르스콜라(Förskola, 취학전 통합기관)에 보내기 전인 신생아기/영아기에는 육아생필품을 사는 데에, 피르스콜라를 보낸 후에는 기관 등록비가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수당을 통해 피르스콜라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 임신수당,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수당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지원 설계 하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영유아 별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우파 연합정권에서 양육수당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나 이용률은 높지 않다.

3) 보육료·교육비 지원³⁾

스웨덴 보육·교육 기관인 피르스콜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에 기반하여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6:30~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긴 운영시간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취업 또는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가 기관 이용을 원할 경우 3~4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아동이 가정에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2002년부터 모든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525시간) 무상 보육교육 제공하고 있으며, 9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pre-school 이용시간을 주당 40시간까

3) <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utbsys-eng/>

〈표 1〉 피르스콜라/데이케어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 2015년 현재

구분	상한 비율	상한액
첫 번째 자녀	월 소득의 3%	1,287(약 18만원)
두 번째 자녀	월 소득의 2%	858(약 12만원)
세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29(약 6만원)

주: 2015년 9월 17일 기준 환율 적용(1 SEK=141원)
 자료: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aivaer-for-maxtaxa-1.9183>.
 2015년 10월 7일 인출.

지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만 2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확장할 계획이다.⁴⁾ 영유아 기관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부모부담]의 삼자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ECEC 기관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을 위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부모 부담 비용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금액 이상으로 ECEC 비용에 대한 부모 수납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 이용에 대한 부모부담 비용은 전체 비용의 약 10~15% 수준으로, 대체로 가구 소득의 3% 이내, 월 최대 SEK 1,287(2015년 10월 기준, 한화 약 180,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한제는 공·사립 기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부모 비용 지원은 가구소득과 자녀연령, 자녀수, 모 취업 즉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 상한선은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자녀수별 비용상한선 차등).⁵⁾

부모 부담 비용은 이용시간, 소득, 자녀수, 지역에 따른 차등지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비용 수준은 다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교육보육 비용의 80% 이상을 정부 지원의 형태로 운영하

고 있다. 2016년부터는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을 올릴 계획을 예정한 바 있다(첫째자녀 1,313 크로나, 둘째자녀 875 크로나, 셋째자녀 438 크로나 예정).

나. ECEC 기관 유형 및 이용률

1) ECEC 기관 유형 및 인프라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피르스콜라, 개방 피르스콜라, 유아학급(preschool class 또는 Kindergarten),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⁶⁾. 우리나라에 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7세로 1년 늦으나, 만 6세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의 제공으로 사실상 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높은 이용률의 취학전 교육과정이 있다. 이는 ECEC와 초등학교의 중간단계로 유아학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와 연계를 중시하는 학교 체계이다. 유아학급은 반일제 교육과정과 방과후 보육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보육 시스템은 취학전 영유아와 취학 이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크게 나

4) Nuffield Foundation(2015). Early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
 5)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6) 취학 후 학교체계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의무교육(10년과정), Sami족을 위한 Sami school, special school, and high school로 구분됨.

뉘어 있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 취학 전후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 동일한 가정양육인 비형식적 시간제 서비스인 Pedagogical care가 제공되고 있으며, 비취업모 또는 종일제 기관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형 피르스콜라와 여가활동센터에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육과 교육이 일원

화 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된 서비스 지원 체계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유형과 이용에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며,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제공되고 있다.

피르스콜라와 여가활동센터 모두 공립기관 수가 많으며, 등록 아동 수 역시 공립기관에 다니

〈표 2〉 스웨덴 취학전 ECEC 기관 유형 및 특징

기관		이용아동 연령	특징
피르스콜라	피르스콜라 (pre-school)	만 1~5세	- 취업 혹은 학업 중인 부부가 이용 가능이 원칙 - 미취업 상태이거나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 - 연중무휴 종일 보육서비스(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균 3학급 정도로 구성, 학급당 인원은 15~24명 정도로, 3명의 교직원 배치 - 지자체별로 비용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pedagogical care	만 1~12세	- 비형식적 기관으로, 2009년부터 Family daycare에서 pedagogical care로 명칭 변경 -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를 하는 경우(만 1~12세 이용 가능, 보통 만 1~5세 이용) - 가정보육과 방과후센터는 취업/학업중에만 이용가능 - 지자체별로 보육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개방형 피르스콜라 (open preschool)	만 1~5세	- 전업주부를 위한 시설. 비형식적 기관 - 기관(피르스콜라)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부모/양육자와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 - 시간제(정기적 등록 필요없음) - 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여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을 이용 - 주로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함. 학기중-시간제위주 방학중-전일제 위주로 제공됨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		만 6세 (취학 전 아동)	- 취학 직전 유아를 위한 기관으로 초등학교 내 위치 - 반일+방과후보육으로 구성됨 -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아니나 높은 이용률로 준 의무교육에 해당함 이용률 99% - 연간 525시간이 무상으로 제공됨
취학아동을 위한 보육	여가활동센터	만 6~12세	-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 -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가 휴일인 경우 아동을 보육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발달을 지원함 - 연중무휴, 시간제 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로 보육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pedagogical care	만 1~12세	-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데이케어를 하는 경우 - 가정보육과 방과후센터는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지자체별로 보육 상한액이 정해져있음

출처: 1) 스웨덴교육청(<http://skolnet.skolverket.se/polopoly/utbsys-eng>)

2)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

3) 이삼식(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 『보건·복지 Issue & Focus』, 16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및 등록 아동 수: 2009~2013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기관	등록아
피르스콜라	9,866	446,080	9,869	457,996	10,033	472,161	9,991	482,309	9,891	489,275
공립	7,280	362,990	7,223	370,290	7,339	380,263	7,267	387,357	7,142	391,874
사립	2,586	83,090	2,646	87,706	2,694	91,898	2,724	94,952	2,749	97,401
여가활동센터	4,328	357,622	4,290	378,488	4,277	396,598	4,316	411,255	4,178	425,945
공립	3,718	323,007	3,650	340,037	3,603	354,676	3,619	365,987	3,514	377,761
사립	610	34,615	640	38,451	674	41,922	697	45,268	664	48,184
개인 서비스 제공자	2,586	83,090	2,646	87,706	2,694	91,898	2,724	94,952	2,749	97,401

자료: Statistics Sweden(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는 경우가 다수이다. 사립/영리 기관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립시설의 다수도 비영리 기관으로 부모협동, 기업 등 단체, 직원협동 등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근거하여 영리 사립 기관(independent schools로 칭함)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추이면에서도 2009년 기준으로 사립기관의 비율은 26.2%였으나 2013년 기준 사립기관 비율이 27.8%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한편, 가정보육모(family child minder)와 같은 개인서비스(pedagogical care)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3년 전체 등록아 기준 전체 약 9.6%, 여가활동센터 42.1%, 종일제 피르스콜라 48.3%로 보고된다.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정책은 「학교법」에 따라 육아 관련 업무가 28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지원 및 ECEC 관련 모든 책임을 전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아학교와 여가활동센터 등의 공급률을 조절하고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관리 감독하며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갖고있다. 중앙부처 교육과학부는 주로 국가수준의 정책 결정을,

국립교육원은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육아지원 서비스에 관한 전체평가와 자료수집,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2) ECEC 기관 이용률

16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부모들을 위한 육아 휴직제도로 인해 육아지원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15~18개월부터 피르스콜라에 다니기 시작하여, 만 1세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육아휴직이 끝난 1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기관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 만 6~12세 취학 아동의 초등 이후 방과후 보육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도 50% 이상으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만 1~6세 전체 영유아의 약 87%가 ECEC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는 다른 민간/사립 서비스 유형 또는 가정내 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EC 기관 서비스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이 2013년 기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09-2013 ECEC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1~2세	3~6세	1~6세			
			전체	피르스콜라	여가활동센터	가정보육시설
2009	70	94	86	69	13	3
2010	70	95	86	70	14	3
2011	71	95	86	70	14	3
2012	72	94	87	71	14	2
2013	71	94	87	71	14	2

자료: Statistics Sweden(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1~2세 영아의 기관 이용률이 모 취업률에 버금가는 7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만 3~6세의 경우 94%의 높은 기관 이용률을 갖고 있다. 사실상 모든 취학전 영유아들이 공적인 ECEC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종일제 피르스콜라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71%로 이 역시 모 취업률을 반영한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높은 ECEC 기관 이용률 하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ECEC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ECEC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2010년 교육과정(Läroplan for Förskola - Lpfö 98) 개정 - 언어, 수·과학 중심의 교육력 강화

스웨덴은 1998년 8월 일원화된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의 제정을 통해 복지부에서 담당 하던 보육이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관, 유아교육의 학교교육으

로의 편입을 통해 유보통합을 이루고 교육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영유아기 보육·교육은 교육법과 학교법에 근거한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국가수준에서 만들어진 취학전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피르스콜라 교육과정은 교육 자체보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놀이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매일 2~3번의 식사가 제공되는 등 교육과 돌봄 기능이 함께 제공되는 통합 보육·교육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서문희·최윤경 외, 2010).⁷⁾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으로, 피르스콜라의 주요 목적이 아이들이 스웨덴의 기본 가치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약자에 대한 연대책임, 양성평등 및 인간평등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생명의 불가침성 등을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한유미 외, 2005).⁸⁾

영유아기 교육과정은 종일제 피르스콜라 프로그램과 시간제 개방형 피르스콜라 프로그램, 그리고 공립 피르스콜라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일부 자녀가 이용하는 비형식적 가정보육 프로그램, 그리고 만6세 무상교육 유아학급에 적용된다.

7)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영리지원체계 개편 방안. 보건복지부.

8)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유아학급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국정 의무교육 교육과정(Lpfö 94)을 따라야 하며 사적 보육이 아닌, 학교교육의 공적 영역에 포함된다(NAE, 2003). 피르스콜라와 초등학교의 전이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지자체는 모든 6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최소한 연간 525시간의 하루 3시간의 반일제 유아학급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유아학급의 교육목표는 아동의 발달과 학급의 자극하고 학교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은 유아학급의 반일제 무상교육과 전후 보육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생애초기 유아교육 및 보육의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조하여 「2009-2011 3개년 계획」으로 총 6억 크로나의 예산(한화 1,023억원)을 들여 취학전 ECEC의 학습준비도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The Boost for Preschool』 법안,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나. 2011년 학교법 개정 - 취학 전과 상급학교의 연계 강화

이어서 스웨덴 정부는 2011년 New Education Act(2011)을 통한 교육개혁(School Reform) 작업을 통해, PISA와 같은 국제연구에서 스웨덴 아동의 지적 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도한다. 스웨덴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논쟁으로 등장함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 학교법 개정을 통해 preschool-kindergarten-compulsory education, 그리고 out-of-school care 와 adult education 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가 지식, 선택의 자유, 안전

을 주요 어젠다로 하여 일관된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하였다.

즉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preschool 교육과정도 언어, 의사소통, 과학·기술 영역을 보강하였으며, 의무교육 3-6-9학년 시점에 전국 학생 성취도 평가 실시토록 한다. 새로운 등급 체계 도입을 통해, 6학년부터 등급(A~F)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취학전 보육·교육 발전법안을 통해 ECEC 기관에서 언어 및 수·과학의 교과교육과 이에 대한 아동의 구체적인 해당 교과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력 강화의 구체적 커리큘럼으로 변화를 시도,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의무교육은 7세부터 시작이나, 앞서 논의한대로 사실상 6세 Kindergarten(구 Preschool Class)을 거의 모든 아동이 다닐에 따라, 사실상 의무교육 10년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 인지 교육, 놀이중심,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모든 아동 대상 공평한 접근성을 갖춘 보편 교육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력 강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ECEC 정책적 변화와 노력의 일환으로, 언어와 수·과학의 교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교사 정책의 변화⁹⁾

가. 스웨덴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및 현황

스웨덴의 영유아교사 자격 체계는 크게 원장과 교사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스웨덴의 육아 지원인력 즉 영유아 교사는 근무하는 ECEC 기관 유형에 따라 크게 유아교사(förskollärare), 보조

9) 「유아교육(ECEC) 교원 양성·자격 정비 및 재교육 국제비교연구」(최윤경·김은설·신동주·장혜진·박창현·홍성은, 2015) 보고서 일부 내용을 발췌

〈표 5〉 스웨덴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및 활동분야

교사 유형	자격기준	양성과정	근무지
유아교사 (Preschool teacher)	학사학위	- 3년 6개월(140주) 대학교육 이수 (실습 12주 포함)	- 피르스콜라 - 개방형 피르스콜라 - 유아학급 - 레저타임센터
보조교사 (Nursery nurses)	후기 중등교육 (고졸)	- 고등학교에서 3년간 아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수 (실습 15주 포함) - 또는 성인교육기관에서 1년간 보조교사 과정 이수	- 피르스콜라 - 개방형 피르스콜라 - 유아학급 - 가정보육 - 취학전 육아지원기관 - 주교사를 돕는 보조 역할
가정보육모 (Family day carers)	형식적 교육 자격요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90-100시간 훈련과정 이수	- 가정보육 - 유아학급/가정보육시설 - 공립 가정보육사: 지자체에 고용되어 급여 및 관리·감독을 받음 - 사립 가정보육사: 지자체에 의해 인가를 얻고, 이후 관리·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음. 개인적 으로 운영됨.
레크레이션 교사 (Free-time pedagogues)	학사학위	- 3년 6개월(140주) 대학교육 이수 (실습 12주 포함)	- 레저타임센터 - 피르스콜라(단, 유아교사와 함께)

자료: 한유미 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스웨덴교육청(2015); 최윤경 외(2015), 유아교육(ECEC) 교원 양성·자격·재교육 국제비교 연구 재인용.

교사(child minder), 가정보육모(family child minder), 레크레이션 교사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ECEC 교사의 양성과정과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종일제 피르스콜라에 근무하는 교사(preschool teacher) 88,900명 중 95%가 유아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것으로, 그러나 정식 교사자격을 갖춘 종일제 유아교사(preschool teacher)는 2011년 기준 54%에 불과하였다. 취학 1년 전에 다닐 수 있는 유아학급(pre-school class) 교사 중 자격 교사는 83%로, 이 중 유아교사 자격자 57%, 여가활동교사 7%, 그리고 기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19%로 구성되어 있다(Skolverket, 2013: 13, 16).

여가활동센터(leisure-time centres)에서 근무하는 여가활동교사(Free-time pedagogues) 교직원 1명당 학생수는 2011년 기준 12.3명으로 점차 여가센터가 줄어들어 따라 유아학급이

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가활동교사가 증가하고 있다(Skolverket, 2013: 41). 가정보육사(Family day Carers)들은 2011년 기준 72%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8%는 사립 가정보육사이다. 가정보육사 중 72%만이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4명 중 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가정보육사 10명 중 4명은 가장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인 아동보육 훈련(child care training)을 이수했고 약 27%는 다른 훈련 과정을 밟았으며 단지 5%만이 대학 수준의 교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kolverket, 2013: 79). 스웨덴의 교원 수는 2004년 75,332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01,251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교직원 수가 월등히 많다.

스웨덴 교사의 법적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소한의 직무연수, 연간 연수 기간에 대한

〈표 6〉 스웨덴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교원 수

구분	공립		사립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총 교원 수	78,744	2,611	18,750	1,146	101,251
유치원장	2,660	348	2,570	189	5,767
교직원	70,800	2,238	17,623	1,015	91,675
유아교사 교육을 받은 자	37,543	995	6,549	244	45,331 (49.4%)
여가활동 교사 교육을 받은 자	467	36	165	15	682 (0.7%)
교사교육을 받은 자	2,076	104	763	60	3,003 (3.3%)
가정보육사(child minder)	26,343	655	6,893	311	34,202 (37.3%)
레크레이션 지도자 교육을 받은 자	79	12	79	15	184 (0.2%)
그 외 훈련을 받은 자	1,113	62	1,200	76	2,451 (2.7%)
훈련 받지 않은 자	3,179	374	1,974	295	5,822 (6.4%)
그 외 보조교사 및 보조인력	3,179	185	735	91	4,190

자료: Skolverket, 2013

법적 규정은 없다. 월 급여는 대학을 졸업한 피르스콜라 교사의 봉급이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보다 10%정도 높고 피르스콜라 교사와 여가활동 강사의 봉급은 초등학교 교사보다 16%정도 적은 수준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2011-2012년 기준, 스웨덴 공립학교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연봉은 최저 28,572유로에서 최고 36,413유로로 평균 32,426유로(한화 약 4천만원)이며, 원장의 경우에는 최저 34,286유로에서 최고 69,769유로로 평균 46,513유로(한화 약 5천9백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Eurydice, 2014: 72, 73). 반면, 가정보육사(Childminders)는 20,150유로(한화 약 2천5백만원), 보육교사는 22,450유로(한화 약 2천8백만원)로 스웨덴의 공립학교 유아교사에 비해서는 낮은 봉급이지만, 프랑스의 가정보육사나 보육교사에 비해 40~60%정도 높은 수준이다(The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3: 18).

한편, 피르스콜라 원장은 자격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선출되거나, 본인의 신청이나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원장은 행정적인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며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분권화로 인해 원장의 재량

권이 커졌다. 원감이라는 직책은 없으며, 198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관여하는 4단계의 통합된 원장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김은설 외, 2009; 최윤경 외, 2015 재인용).

나. 교사 자격제도의 전면 도입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발달의 토대 마련을 위해, 스웨덴에서는 교사 정책의 변화를 통한 ECEC 질 제고와 스웨덴 아동의 교육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의 다양한 배출경로, 유아교사 자격의 3.5년 최소 대학 교육 연한, 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안정된 대체교사 운용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3년 12월 교사자격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즉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preschool, kindergarten 교사부터 모든 교사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 한하도록 명시하였다.

스웨덴의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은 유럽연합 불로냐 협약에 의해, 유럽국가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교사 양성의 틀을 적용한다. 스웨덴의 경우 대학교육협의회(또는 고등교육기관 협의회)에서 3년반에 해당하는 취학전 ECEC 교사 양성과정

에 대한 표준화 된 기준을 갖는데, 3년반 양성과정 이수 후 무시험검정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과거에 실시하던 약 1년간의 교사 인턴 제도는 사라지고, 대신 첫 해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교사 권리의 개념 차원에서 다양한 현직교육과 멘토링의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보조교사도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정식 양성과정이나 자격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체계를 살펴보면, 일원화 된 체계 내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의 교사 배출과 자격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말에 이르러서 「전문 교사자격제도」의 적용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ECEC 서비스 질의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다 강화된 통일된 자격과 양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나, 완전 유보통합 국가로 알려져있는 스웨덴의 ECEC 영유아교사와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보면,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유형과 자격기준의 교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보통합의 실태가 모든 요소에서 완전히 통일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산하에서 통합된 교육적 관점에서 행재정을 이끌고 법·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효율성은 유보통합의 체제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사점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1996년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식강국의 기초를 다졌다(문무경, 2006). 1970-80년대 유아학교제도의 확대, 1998년 유아학교 개혁 이후, 2009년 1-5세 아동의 90% 이상이 유아학교에 다니는

높은 등록률을 보이며(Sweden gov. 2009).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유아학교(만1-5세)와 유아학급(preschool class)(만6세), 초등학교(9년), 여가활동센터 간 연계성을 높이고, 취학전 교사양성체제를 학교 체계간에 전체적으로 통합하였다. 2001년 유아학교교사, 여가활동교사, 초등교사, 아동보육사 교사양성체제를 통합하고, 3.5년간의 양성기간 중 첫 1년은 공통과정을 운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된 목표, 가치, 철학을 공유하도록 하였다(최윤경 외, 2015 재인용).

ECEC 교육·보육 정책의 측면에서 스웨덴 아동의 건강하고 역량있는 성장 발달을 위해 교사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의 강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한 교육개혁 작업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 산하로 완전 통합된 국가유형으로, 영유아 교사의 자격 강화와 교육과정의 변화가 통합된 교육의 체계 내에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원화 된 완전통합 모형 내에서도 다양한 자격 기준의 교사가 상호 협력의 팀 티칭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의 기저에는 교사의 권리와 근로복지, 임금수준이 존중되는 사회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의 이념적 원칙에 근거하여 ECEC 기관이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 하루 11시간 이상의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점, 종일제 공보육·교육시설 외 사적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ECEC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민주사회주의 국가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아동 중심의 교육적 특성에 근간한 교육과정의 운영, 통합체계 하의 교사의 다양한 배출경로, 유아교사 자격의 3.5년 대학연한, 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안정된 대체교사 운용 등은 주요하게 참조해야할 정책사항이다(서문희 외, 2010; 최윤경 외, 2015 재인용).